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박홍배 • 박 정

손명수・조 국・복기왕

고민정 • 박희승 • 김태년

이병진 • 전진숙 • 김주영

윤건영 · 서영석 · 민형배

박수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, 난임치료 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,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음.

이에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,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 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 고,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'연간 3일'에서 '연간 6일'로 확대하며,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'최초 1일'에서 '최초 3일'로 확대하고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'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'인 경우에서 '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'인 경우로 확대하며,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 등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배우자 출산휴가"를 "배우자 출산휴가,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8조의2제1항"을 "제18조의2제1항, 제18조의3제1항 본문"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4항 중 "1회"를 "3회"로 한다.

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"연간 3일"을 "연간 6일"로, "최초 1일"을 "최초 3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만 8세"를 "8세"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"를 "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(이하 "육아기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"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

자"를 "근로자"로, "기간을"을 "기간의 두 배를"로 한다.

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만 8세"를 "8세"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국가는"을 "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"으로 한다.

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난임치료휴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 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연 생	개 성 안
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	제18조(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
지원)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	지원) ①
따른 <u>배우자 출산휴가</u> , 「근로	<u>배우자 출산휴가, 제18조</u>
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출산전	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
후휴가 또는 유산・사산 휴가를	
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	
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	
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	
하는 금액(이하 "출산전후휴가	
급여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	
있다.	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	②
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	
에서 <u>제18</u> 조의 <u>2제1항</u> 또는 「근	<u>제18</u> 조의2제1항, 제18조
로기준법」 제74조제4항에 따	의3제1항 본문
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	
다.	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	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<u>1회</u> 에 한	4 <u>3</u> ছ্ৰী
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 사업	제18조의3(난임치료휴가) ①

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(이하 "난임치료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하며,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 설>

③ (생략)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 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<u>만 8세</u>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

연간 6일
최초 3일
<u>.</u>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
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
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
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
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
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19조(육아휴직) ①
<u>8</u> A]

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
② ~ ⑥ (생 략)
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 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·③ (생 략)

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 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 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 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

·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 <u>12세 이하</u>
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(이하
<u> "육아기"라 한다)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4
<u>근</u>
<u>로자</u>
<u>기간의 두 배를</u>

내로 한다.

- ⑤ ~ ⑦ (생 략)
- 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 의 조치)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 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~ 4. (생략)
 - ② (생략)
- 제20조(일 ·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) ① (생 략)
 -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 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

제4조(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) 제 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
의 조치) ① <u>8세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일・가정의 양립을 위한
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
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

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

<삭 제>

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 용한다.